

일 자리 안정자금





발표순서

- I 사업 개요
- II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요건
- III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 IV 신청절차 및 방법
- V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 VI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인정 기준



I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18년
최저임금
7,530원

’17년 대비
1,060원 인상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 ①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3조원 내외,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감안 대상선정
- ②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등

8.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안)」 의결 (국무회의)

* 기재부·고용부(공동주관), 산업부, 복지부, 종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 TF 운영

11.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사업 기간 ▶ 2018.1.1~12.31

사업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조건)

사업신청 ▶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 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 복지·건보·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지원 방식 및 지원 금액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시 소급 지급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3~12만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10~13만원

(근로자 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체계 및 절차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부정수급액 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근로복지공단

- 사업 주체 (보조금 집행)
- 관리 및 홍보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 적발, 환수명령)



보조금 신청



접수



심사



지급



사후관리

사업주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3공단 EDI 등

오프라인

복지·건보·연금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e-나라도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e-나라도움)



II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요건

원칙적으로 모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지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18년도
최저임금 준수

지원금 지급기간
내 고용 유지

지원제외
대상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예외적
지원 대상

-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대상 기업] 30인 미만 사업(주)



☑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

*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신청 시 지급시작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할 수 있음

-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외국인 등)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

☑ 지급 도중 근로자수 변동(인원 증가)이 발생한 경우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 지원중단 이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재신청 가능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 1] 고소득 사업(주)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18.1.1~8.31 신청사업주 → '16년 자료, '18.9.1 이후 신청사업주 → '17년 자료로 검증

개인사업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금액: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

☞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금액

법인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 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 당기순이익: 일정 기간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



[지원제외 2]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고용부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제도 개요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43조의2)
- 공개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성명·상호·나이·주소(법인은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
-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 공공장소
- 공개기간: 3년

☑ 법인은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는 대표사업주 및 공동대표도 포함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근로자에 임금체불 발생 시, 해당월부터 지급 중단



[지원제외 3]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 (총 1,106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소, 기초 228개	245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36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398개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초·중·고등학교	76개



[지원제외 4] 인건비 재정지원사업 대상



- ☑ **원칙**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금을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는 지원 배제

- ☑ **예외**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 상향조정 하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근로자수만큼 차감 후 지급 (지원근로자수 × 13만원)





[지원대상 기업] “최저임금 준수”



☑ 신청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이상

*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에 대한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 기재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서 입력 불가

☑ 지원도중 최저임금 미준수가 확인되면

⇒ 해당월부터 사업장 전체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원 금액 환수





[지원대상 기업]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 발생시, 해당 월 지원금부터 지원 중단

☑ 불가피한 고용조정시, 이를 소명해야 계속 지원 가능

⇒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 고용조정 이전 달 기준 직전 3개월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 축소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 기타 업종·지역경제 상황을 고려,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요건1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요건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5일 이상 실근로

요건3

고용보험 가입
*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임업)은 가입없이 지원

요건4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조정한 경우 인정

지원
제외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 '18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대상

* 보수(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일용근로자는 1일 기준 87,000원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

- 기 신고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을 넘은 경우 ⇒ 부지급
- 지원기간 중 급여인상으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이상이 된 경우 ⇒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기본급 등 월평균보수(190만원 이상)나 소정 근로시간 등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수될 수 있음



Ⅲ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1 ▶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text{지원액} = 13\text{만원} \times \frac{\text{근로일수}}{\text{해당 월 일수}}$$

*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2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변경신고 등 사업주의 신청편의, 업무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 구간 설정)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 단시간 근로자 또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 가능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지급기준 시간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35시간	12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5시간	9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5시간	60,000원
10시간 미만	5시간	30,000원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text{지원액} = \text{구간별 지원액} \times \frac{\text{근무일수}}{\text{해당 월 일수}}$$

* 상용·단시간 근로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근로일수 별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지급액
22일 이상	22일	1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0일	12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16.5일	100,000원

※ 단,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을 산정
[예] 22일 이상인 경우 (130,000원×평균 근로시간)÷8시간

지급 시기

-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
 -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지급 방법

-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IV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자 및 신청시기



신청자

- ☑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보험사무대행 기관 활용 가능 (무료 대행)
 - 신청당시 해당 사업(주)이 1개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18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8.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시기

- ☑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신청 ('18.1.1~12.31)

지급기간

- ☑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내용

- ☑ '18년 지급 임금
 -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온라인

-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5인 이상 사업장은 ON-LINE(EDI) 신청이 원칙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오프라인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
- ☑ 사업장 관할 건보·연금·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 (팩스, 우편, 방문)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신청 서식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기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도서식)

첨부 서류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 임금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ex) '18. 5월에 근로자 2인 지원신청시
근로자 A(1월 입사), 근로자 B(3월 입사)
→ 근로자A: 1월 임금대장,
근로자B: 3월 임금대장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
⇒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제출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의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만 가능

- ☑ 신청서와 더불어 체크리스트와 부속서류를 추가 입력(또는 제출)

- ☑ 방문 접수 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다운

- ☑ 3공단 공동접수 등을 위해 '고용보험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
 - 개인 사업(주) 중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사업(주) 명의로 신청,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신청서식에 추가 기재
 - 단, 사업규모 및 지원요건 판단은 사업(주) 단위(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정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적극 활용

추가신고

- ☑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되는 경우
⇒ '고용보험 신고서'로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

변경신고

- ☑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 고용보험 관련 신고 병행
- ☑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시
⇒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부정수급 정의 및 유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 ☑ 거짓 신고,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 근로자의 입·퇴사일,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등록(위장 취업), 임금지급내역 서류의 위변조 등
- ☑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 지원요건 충족
- 사업장 분할 설립, 급여내역 및 실 근로일수 등을 조작 등
-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적발시 조치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지원금액의 5배)

- 부정수급 1천만원 이상
-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인정 기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 기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지원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 그 외의 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전체 근로자수가
 - 30인 미만 ⇒ 소속 근로자 전부 지원
 - 30인 이상 ⇒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금 수령

-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시설주) 등에 지원금 지급
 - ⇒ 용역업체가 “지원금 + 최저임금 인상분 시설주에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방지
 - ⇒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 지원금 직접 지급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
 - *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여 유형별로 구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와 위탁업체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한 경우는 협약서 불필요

신청방법

- ☑ [온라인] 4대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으로만 가능
 - ①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② 체크리스트 작성
 - ③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 작성·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내역’에 공동주택별로 구분 기재
 -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 ‘경비·청소원’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 필수등록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등록
 - * 미등록 확인 시 해당 월부터 지급보류 → 등록 이후 소급 지급) ⇒ 모니터링 실시
 - * 필수등록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 차감 내역 등 확인



감사합니다